

##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9년 1월 3일(목) 11:00
2. 회의장소 : 1호관(대학본부) 8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10명
4. 불참위원 : 없음
5. 회의안건
  - 1) 제1안건 : 위원장 선출
  - 2) 제2안건 :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(안) 심의
  - 3) 제3안건 :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(안) 심의

### 6. 회의내용

#### 1) 제1안건 : 위원장 선출

임시 사회자 :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팀 팀장이 위원장 선출 사회를 진행함에 대해 위원들의 양해를 구하고,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원장 선출을 진행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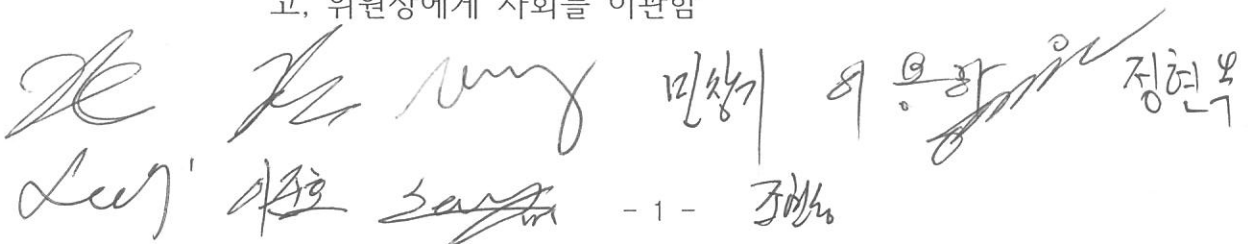
이용하 위원 :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활동 경험이 많은 김영흡 위원을 추천함

민창기 위원 : 김영흡 위원 추천에 동의하고 재청함

임시 사회자 :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김영흡 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구함

전 위원 : 전원 찬성함

임시 사회자 : 전 위원 찬성으로 김영흡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공지하고, 위원장에게 사회를 이관함

 민창기 위.용하 임.정현복  
Lee' 장호 조영수 - 1 - 조영수

위 원 장 : 위원 10명 중 10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함

2) 제2안건 :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(안) 심의

위 원 장 : 회의 안건인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(안)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

기획예산팀장 : 배부자료에 의거하여 설명함

산업체위탁생 및 복학생 감소 등의 영향으로 등록금 수입은 감소하고 시설용역비 및 공공요금 등 고정 지출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, 2018학년도에 이어 2019학년도 입학금도 전년 대비 11만원 인하하고 수업료는 동결하는 것으로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(안)을 제출하였음을 설명함

하병항 위원 : 산업체위탁생 및 복학생 감소, 2018학년도부터 5년간 시행하는 입학금의 단계적 감축 등으로 매년 등록금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업료 인하는 불가능하고 동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됨

이용하 위원 : 2019년 8월부터 강사법이 시행되면 이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예상되고 2018년 최저임금 16.4% 인상 및 2019년 최저임금 10.9% 인상에 따른 용역경비 증가 등 고정 지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업료를 동결하여도 대학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

오승미 위원 : 등록금 수입은 감소하고 고정 비용은 증가함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에는 영향이 없는지 문의함

기획예산팀장 : 2018학년도까지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이 증액되도록 관리하였으며, 2018학년도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입학금을 감축하면서 입학금 감축 대응 국고 장학금이 추가로 지원되므로 학생 장학금 규모는 오히려 커질 수 있음을 설명함

이희진 위원 : 2009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정책을 유지해왔으며 2018학년도부터는 입학금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므로, 입학금을 전년 대비 11만원 인하하고 수업료를 동결하는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(안)에 이의가 없음

이준호 위원 : 이희진 위원 의견에 동의함

위 원 장 :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(안)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위원들의 의견을 구함

전 위 원 :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(안)에 찬성함

위 원 장 : 전 위원 찬성으로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(안)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

김창기 이용하 정현목  
- 2 - 김재호

3) 제3안건 :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(안) 심의

위 원 장 :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(안)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

기획예산팀장 :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등록금  
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규칙에 10일 이내  
회의록 공개 사항을 명문화하고, 2018년 사학기관 예·결산 및 기본재  
산 실태점검 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 예산 범위 내에서  
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외부위원 회의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 
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을 설명함

오상조 위원 :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개선권고 사항에 근거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 
규칙 개정이므로 원안에 이의가 없음

정현옥 위원 : 오상조 위원의 의견을 동의함

위 원 장 : 위원들의 추가 의견 제시를 요청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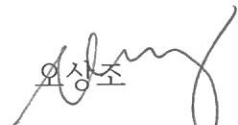






전 위 원 : 추가 의견 없음

위 원 장 : 전 위원 찬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(안)이 원안대로 가결  
되었음을 선포하고 다른 추가 안건이 있는지를 확인함

전 위 원 : 추가 안건 없음

위 원 장 : 다른 추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함  
(폐회시간 12:00)

2019년 1월 3일

위원장 :	김영흡					
위 원 :	하병황		오상조		민창기	
	이용하		이희진		정현옥	
	이준호		오승미		조현성	